

도시환경과 공공미술 심포지움

Proceedings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공공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Opening New Horizons on Public Art

일시 2011년 11월 30일 (수) 14:00 ~ 18:00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102호

Opening New Horizons on Public Art

공공미술 새로운 지평을 열다

프로그램

사회 박두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부장)

개회사/환영사	14:00-14:20	개회사 환영사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소장)
기조발표	14:20-14:40	01 기조발표_ 혁신도시의 미래와 문화환경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1부)	14:40-15:05	02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미술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15:10-15:30	03 현대미술과 공공장소 - 제 2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휴식	15:30-15:40		
주제발표 (2부)	15:40-16:05	04 문화환경과 혁신도시 - 공진화의 비전과 발전의 논리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6:05-16:30	05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휴식	16:30-16:40		
종합토론	16:40-18:00	좌 장 :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토론자 : 김정렬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천추진단 기획국 국장) 박무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성장활력국 국장) 박순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장) 박양우 (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박은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손수호 (국민일보 논설위원) 이규인 (아주대학교 교수)	

개 회 사

도시의 문화 환경에서 공공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주요 한 축으로 자리잡아온 건축물미술작품제도(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는 최근의 이러한 문화적 움직임에 발맞춰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벽화사업을 시작으로 세계 미술사에서 미술작품이 미술관 밖으로 나온지 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건축물미술작품제도가 제정되어 40여 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국에 설치된 1만 2천여점의 미술작품은 우리나라 도시의 문화적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물론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니다. 많은 작품들이 주변 공간의 맥락과 상관없이 설치되거나, 부실한 관리로 흉물로 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년, 이제는 미술작품이 단순히 건물 밖에 설치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도시의 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하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도시, 조경 각 분야와 협력하여 조화롭고 완성도 높은 도시 미관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아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같은 사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에 뜻을 모으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소중한 발표를 해주시는 각계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여러 분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이룸 그대로 진정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닌 공공미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미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오 광 수

Opening New Horizons on Public Art

공공미술 새로운 지평을 열다

목 차

기 조 발 표

01	기조발표_ 혁신도시의 미래와 문화환경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00
----	---------------------------------------	----

주 제 발 표

02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미술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	00
03	현대미술과 공공장소 - 제 2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김성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00
04	문화환경과 혁신도시 - 공진화의 비전과 발전의 논리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0
05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진 (서울대학교 교수)	00
06	부록_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소개	00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1

기 조 연 설

혁신도시의 미래와 문화환경

박양호 _ 국토연구원 원장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2

주 제 발 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미술

김도년 _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Ucity대학원 교수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미술 (Place Making and Place Curating)

김도년 _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Ucity대학원

1. 공공미술장식품의 개요

1995년 이후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의무화로 전국 각지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이 약 2만 여점에 이르고 있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시민의 문화 증진에 기여하려면 좋은 작품, 시민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설치되어야 하며 고객은 건물주인과 시민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장소만들기에 기여 하고 도시의 특화요소로 발전되어야 한다.

공공미술장식품은 미술 및 도시경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작품 설치와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오히려 도시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미 공공미술장식품은 양적으로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질적 저하의 문제로 도시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장소환경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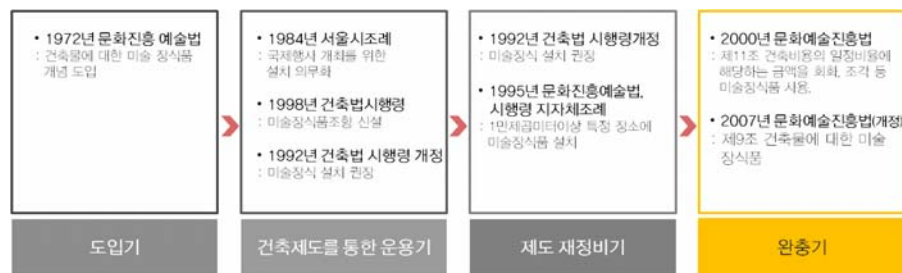
공공미술장식품의 제도적 특징

공공미술품은 건축법과 이에 따른 규정으로 명시하여 권장하였으나 최근 해당 조항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의무조항으로 강화하였다. 이 법령은 대통령령에 의해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건축비의 일정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미술장식품으로 설치하도

록 정하고 있다

1972년 문화진흥예술법이 제정되면서 건축법에 대한 미술장식품 조항이 도입되면서부터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시행령에 의하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고 하였으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에 제 11조에 의해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비용의 1/1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도록 하였다. 제24조의 3(미술장식 심의 위원회)에서는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미술장식과 환경과의 조화’,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미술장식품 변천과정

2. 신도시에서의 공공미술장식품 : 상암 DMC

서울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는 특화 부도심으로 2000년부터 계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집적지이다. MBC, SBS, YTN, CJ엔터테인먼트, 드래곤플라이, 팬엔터테인먼트, 중앙, 동아, 조선일보 등 300여개 미디어 관련 기업과 20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있고 매년 미디어 컬쳐오픈과 슈퍼스타케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상암 DMC의 공공미술장식품은 예술적 특성으로 장소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장소의 질을 높이는데 매개 역할을 하도록 계획되었다. 즉, 개별 건축물의 미술품이 아닌 장소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장소/장소, 장소/건물과 같이 장소간의 조화를 이루어 공공미술품과 도시장소를 큐레이팅(Curating)이 하는 역할로써 계획되었다.



상암 DMC 공공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1) 상암 DMC의 공공미술장식품

공공환경에 기여하는 공공미술장식품

상암 DMC는 도시장소의 방향성과 부합한 공공미술장식품을 계획하였으며 공공 요소로서 공간환경에 미술적, 장소적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문화장소 조성과 네트워크로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상암 DMC 공공미술장식품 설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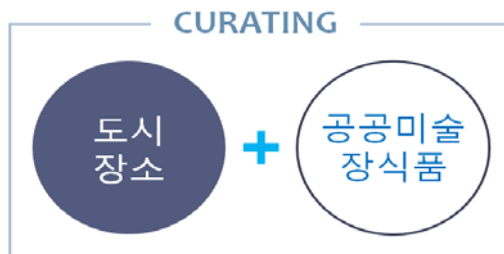
전체 도시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시의 비전과 공공미술계획을 함께하였으며 장소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미술장식품 계획을 위해 장소의 주요 지점,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다.



상암 DMC의 장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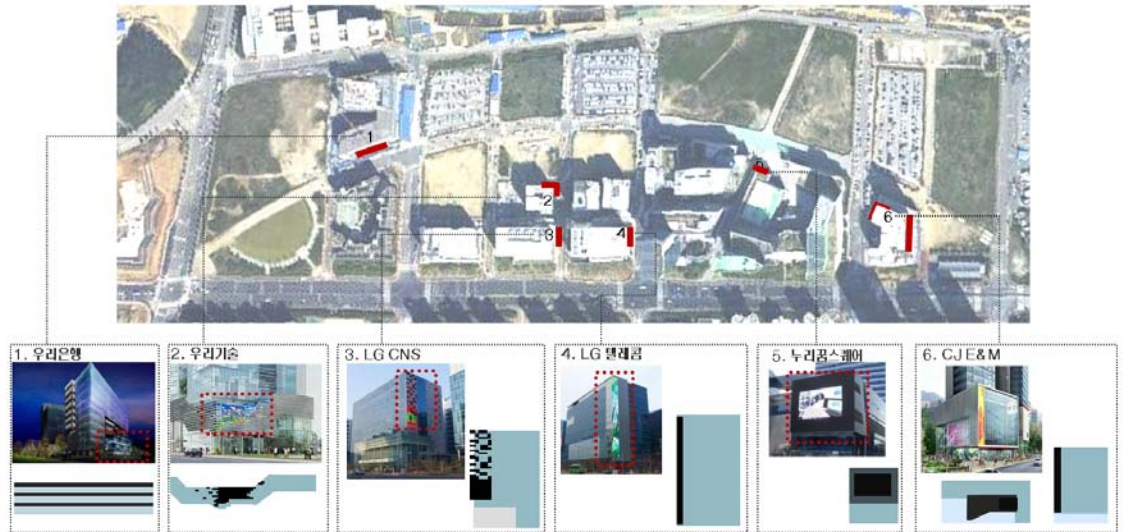
공공미술과 도시장소의 큐레이팅(Curating)

공공미술장식품의 예술적 특성으로 장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공장소의 질을 높이는 매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개별 건축물만의 미술장식품이 아닌 장소 만들기 기여하고 장소와 장소, 장소와 건물과의 조화로 공공환경의 질을 높이는 계획을 실시하였다.



공공미술장식품의 큐레이팅 방향

상암 DMC의 장소적 특성에 맞도록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공공미술장식품을 계획하였으며 디지털 파사드(Digital Facade)을 통해 미술장식품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이로써, 공공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스트리트퍼니처(Street Furniture)를 디지털파사드를 통해 미술이 공공환경에 리드하도록 하였으며 Augment Place Making을 통해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공공환경을 주도하였다. 디지털파사드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공공환경조형물로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디어아트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건축과 어울리지 않는 공공환경조형물의 디자인과 콘텐츠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되었다.



상암 DMC에서의 디지털 파사드

한 차원 높은 도시공간 만들기

상암 DMC는 주요 거점의 공공장소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미술장식품 계획으로 한차원 높은 도시공간을 창출하였으며 입지기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공공미술장식품은 문화와 장소의 네트워크로 공공미술장식품으로 인해 장소를 점령하기 보다는 장소와 건축물을 융합하는 시도로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을 강조하였다.



상암 DMC 계획방향

공공미술장식품의 설치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미술장식품으로의 개념 전환과 공공장소에 공동설치를 모색하고자 상암 DMC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건축물 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DMC 만의 미술장식품의 예시를 제시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활동할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안정성 확보, 사이버 환경이 상호 작용하는 DMC의 취지에 부합한 예술 형식을 구현하였다.

PUBLIC ART 설치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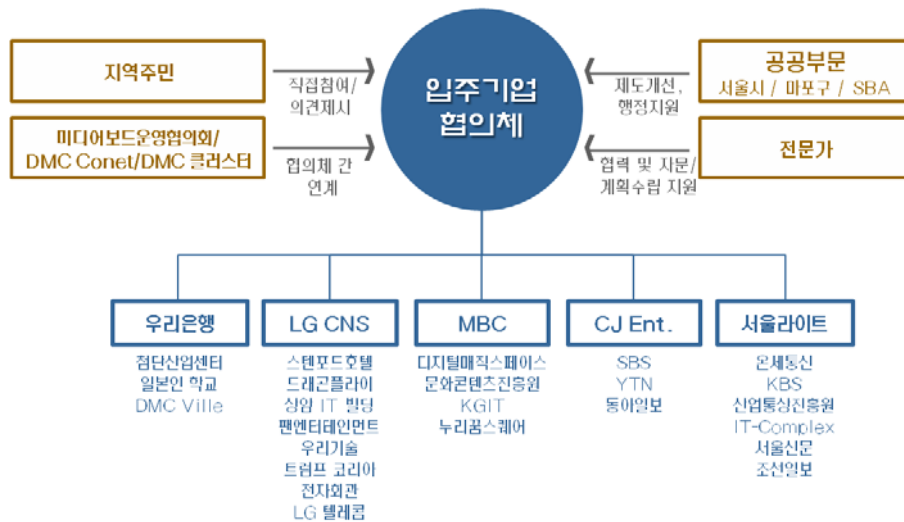
- 공공미술 개념으로의 전환과 함께 공공장소에 공동설치를 모색하고 있음
- DMC의 특수성을 살필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추진
- 건축물의 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DMC만의 미술장식품의 예시 제시
- 많은 이용객들이 활동할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 가로활동, 물리적환경, 사이버환경이 상호작용하는 DMS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술형식 구현

구분	Experimental Park (A블록)	IT-Art Park (B블록)	Media Plaza (C블록)	Exhibition Plaza (D블록)
설치될 미술장식품 성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네틱 요소를 가미하여 디지털 요소가 숨어있는 촉각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조형물 -DMC정보를 공유하면서 감각적으로 디지털 환경을 체험하도록 하는 작품 - 순수조형물로서 디지털 개념을 소재로 하는 조형과 형태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와 게임, 정보와 오락을 줄 수 있도록 공간과 공간을 잇는 인터페이스 조형물 내지 설치물 혹은 소원도우 게임 - DMC데이터와 코드를 활용하는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ASCII 아트 및 프로그래밍 그래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실험영상 및 애니메이션 - 수경사설 등을 통해 자연스러움을 살리는 가로조형물 - 보행활동성을 자극하고 확대시키는 Reactive Mirror Wall, Reactive Ground, LED블록등의 디스플레이 설치물 - 바닥에 설치 또는 보드블럭을 이용한 러시아산의 현대화된 업티앨아트 또는 모자이크 작품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퍼포먼스를 자극하는 인터페이스 및 개념적 디지털 아트 설치물 - 모바일 네트워킹인프라를 이용한 사운드 설치물 및 디스플레이 조형물

상암 DMC의 공공환경미술품 성격 및 가이드라인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시스템

상암 DMC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에 의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공공환경 미술장식품을 실현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역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신규 입주 기업 및 주민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심어주었다. 공공환경미술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된 디지털 파사드는 지역협의체 중심의 관리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다.



상암 DMC 공공미술장식품 관리운영체계

건축설계와 연계한 통합설계 방식을 유도하여 문화 인프라로 도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였으며 기획협의를에서부터 계획협약까지 이르는 계획 방향을 가지고 있다. 기획협약은 계획의 방향과 위치를 설정하고 작가 선정방식을 건축주, 서울시(지자체), 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계획협약은 작가와 건축주, 건축가, 서울시(지자체), 자문위원단으로 건축과 환경조형물을 연계하고 입지기업의 특성과 DMC의 특수성을 살린 계획을 유도하였다.



상암 DMC 공공미술장식품 계획 방법

2) 상암 DMC의 공공미술장식품 설치 문제점

상암 DMC는 모든 도시설계와 조경 그리고 개별 건축물에도 DMC의 취지를 반영하게 하는 강력한 도시설계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미술장식품도 예외는 아니나 타분야에 비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 않아 그 성과 측면에서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미술장식품은 DMC 장소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과 담당 공무원의 변동 등 전문적인 정책적 일관성 결여로 계획적 목표 달성이 어려워 DMC의 중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작품 의무설치, 심의위원의 적부심사에 통과한 작품을 설치하도록 법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로 건축주는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환경미술품에 대한 공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미술장식품에 대한 본래의 가치보다는 의례적인 수단으로 조형물과 장소의 성격이 떨어지고 있다.

상암 DMC 공공미술장식품 현황

<p>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미술장식품</p>			
<p>주변환경,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공공미술장식품</p>			
<p>접근과 체험이 제한된 관람위주의 공공미술장식품</p>			
<p>모호한 예술성</p>			
<p>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미술장식품</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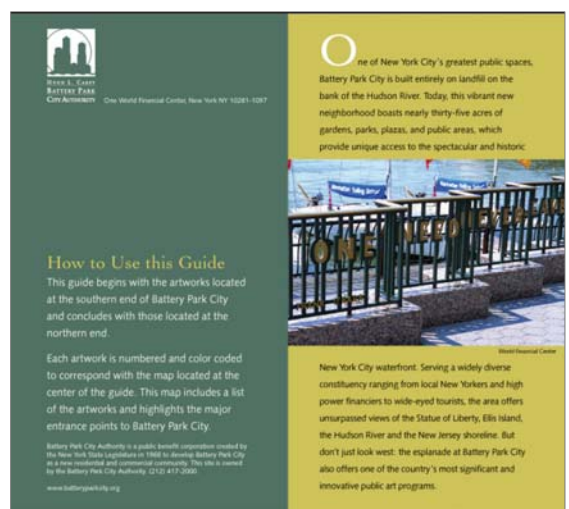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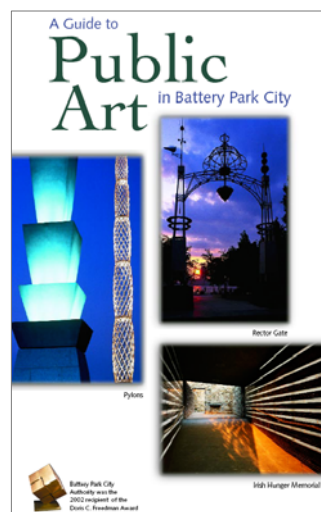
신도시인 상암 DMC에 설치된 공공미술장식품을 살펴보면 체험을 목적으로 제시한 계획 취지와는 다르게 바라보기만 하는 장식품으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미술장식품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공공미술품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재질과 디자인인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 장식품이 되고 있다.

문제점 1.	▪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공미술장식품
문제점 2.	▪ 디자인과 재질이 주변 환경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공공미술장식품
문제점 3.	▪ 시민의 참여와 접근, 체험이 제한된 공공미술장식품
문제점 4.	▪ 모호한 예술성의 공공미술장식품
문제점 5.	▪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미술장식품

3. 뉴욕 BATTERY PARK CITY 사례

뉴욕 배터리파크시티는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된 대표적인 프로젝트중 하나다. 공공미술장식품은 마스터플랜이나 건축물, 공원 등이 계획되고 나서 그 위에 선택적으로 일부 설치되는 단순한 미술장식품이 아니라 도시개발의 첫 단계에서부터 통합적 환경의 일부로 고려되어 계획되었다.

공공미술장식품으로 인해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기적으로 장소를 연계하는 매개체로 발전되었다.



Battery Park의 공공미술장식품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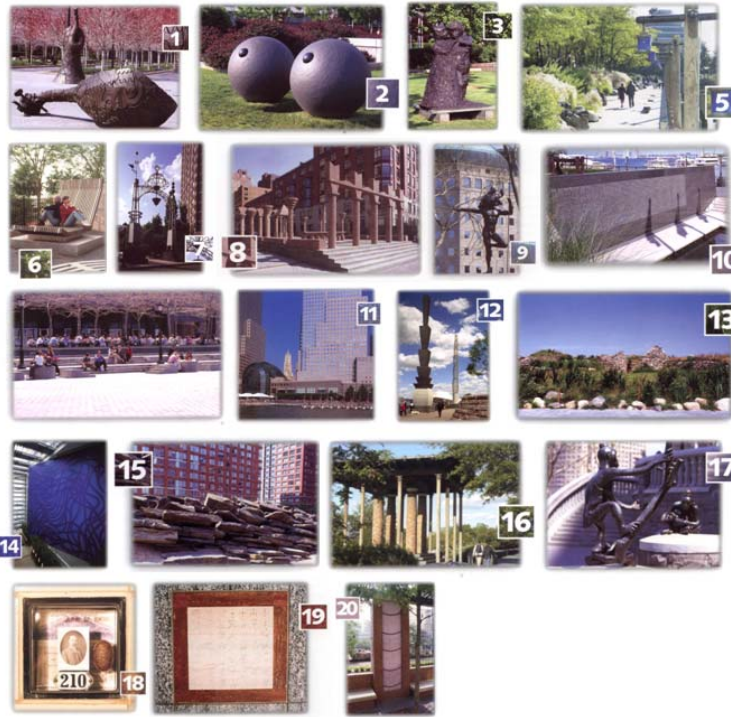
배터리 파크는 공공미술장식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소를 점령하기 보다는 장소와 건축물을 융합하는 시도로 시민에게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실용이 강조된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배터리 프로젝트에 참가한 메리 미스는 미술관에 규칙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접근 가능한 강렬한 시각적, 육체적, 감정적 경험을 창출하는 장소와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미스를 비롯한 낸시, 홀트, 아테나, 타샤 등과 같은 미술가, 건축가, 조경 디자이너, 엔지니어, 커뮤니티 활동가 등과 함께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배터리파크의 공공미술장식품



BATTERY PARK CITY의 공공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1. Tony Cragg - Resonating Bodies, 1996
2. Louise Bourgeois - Eyes, 1995
3. Jim Dine - Ape & Cat (At the Dance), 1933
4. Andy Goldsworthy - Garden of Stones, 2003
5. Mary Miss, Stanton Eckstut, Susan child - South Cove, 1988
6. Richard Artschwager - Sitting/Stance, 1988
7. R. M. Fischer - Rector Gate, 1988
8. Ned Smyth - The Upper Room, 1987
9. Ugo Attardi - Ulysses,
10. Stuart Crawford - Police Memorial, 1997
11. Siah Armajani, Scott Burton, Cesar Pelli, M. Paul Friedberg - World Financial Center Plaza, 1986
12. Martin Puryear - Pylons, 1995
13. Brian Tolle - Irish Hunger Memorial, 2002
14. Sol LeWitt - Loopy Doopy (Blue and Purple), 1999
15. Michael Van Valkenburgh Associates Ann Hamilton with Michael Mercil - Teardrop Park, Fall 2004
16. Demetri Porphyrios - The Pavilion, 1992
17. Tom Otterness - The Real World, 1992
18. Kristin Jones & Andrew Ginzel - Mnemonics, 1992
19. Michelle Stuart - Tabula, 1992
20. John Hatfield - Story Pattern, 2001 (Cat in the Hat, Little Prince, Bert, Dorothy, Piglet, Eloise, H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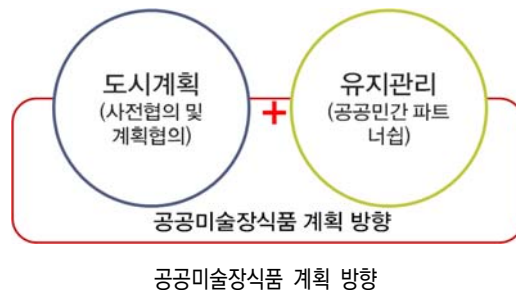
BATTERY PARK CITY의 공공미술장식품 작가와 작품명

4. 좋은 도시 만들기와 어우러지는 공공미술장식품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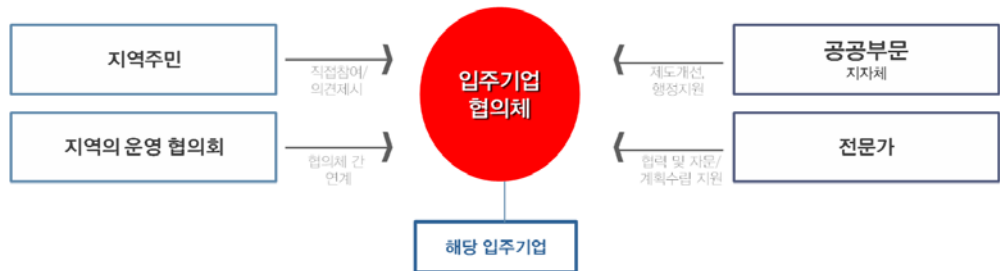
- 1) 관람객(client)는 누구인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 공공미술과 예술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이를 바탕으로 사랑받는 요인으로 의미 재정립이 필요하다.
- 2) 전시관인 도시 환경과 어우러져야 한다. 도시 설계와 계획 방향과 그리고 도시가 지향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작품을 마련되어야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다. 이러한 이해와 고려가 전제되어야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라 도시의 상징과 매력 요소인 도시예술(civic art)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 3) 계획에서 장식품의 작품 방향과 설치 위치, 디자인을 제안하고 도시설계를 함께 진행한다. 사전협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건축주와 지자체 및 MA 자문위원회/건축설계진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공공미술장식품이 계획되도록 유도한다. 사전협의 시스템은 계획의 방향 및 위치를 건축주와 함께 논의하고 작가 선정

방식을 협의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기획협의를 실시한다.

- 4) 시민이 평가를 통해 진화가 필요하다. 계획 협의 단계에서는 작가, 건축주, 건축가, 지자체, MA 자문위원회/건축인허가와 연계하여 건축설계 시 건축과 공공미술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입지기업의 특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방문자와 인터렉션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민 친화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건축주를 지원한다. 작품은 입주민과 일반시민이 평가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공미술장식품이 되도록 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미술장식품을 관리하도록 한다. 공공미술장식품의 한계를 디지털 파사드 개념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소재와 콘텐츠로 시민이 직접 참여는 공공미술장식품이 되도록 한다.



신도시에서의 공공미술장식품은 양적으로 확보 가능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암 DMC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계획협의, 가이드라인, 공공/민간 협의체를 통해 좋은 도시 만들기의 공공미술장식품이 필요하다. 도시 비전이 반영된 장소만들기적 공공미술장식품의 통합계획을 실시하여 향후 유지관리가 가능하고 공공환경에 기여하는 공공미술장식품으로 개별 건축물의 미술품이 아닌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장소만들기를 통해 도시의 특화요소로 발전되도록 한다.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3

주 제 발 표

현대미술과 공공장소 - 제 2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김성원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현대미술과 공공장소 제 2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

김성원 _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번 연구는 2007년도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APAP)를 중심으로 공공장소와 현대미술과의 만남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04년 안양시 만안구의 예술 공원 조성계획과 함께 출발했으며, 비엔날레 형식을 취하고 있고, 영구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한다. 1회(이영철 예술감독)는 2005년 11월에 안양시 만안구의 안양 예술 공원을 탄생시켰고, 2007년 2회 (김성원 예술감독)는 안양시 평촌 도심에서 전개되었으며, 2010년 3회(박경 예술감독)는 커뮤니티와 도시환경과 건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안양시는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의 보다 원활하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7년 안양공공예술재단을 설립했으며, 본 프로젝트는 안양공공예술재단이 주관하고, 안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안양시(평촌)에서 전개되었다. 2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는 평촌 도심 속에 현대미술 작품을 영구설치 하는 프로젝트로서 2006년 3월에 준비하기 시작해서 2007년 10월 완료되었으며, 현재 평촌에 국외 작가 22명, 국내작가 18명, 총 40여명의 작품이 영구설치 되었다. 모든 외적 조건에서 공공성이 부각되는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러한 공공적 조건들과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현대예술의 특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며, 또 안양시민들과 현대예술의 만남을 어떻게 유도 할 것인가에 있다. 2회 프로젝트의 방향은 기존 도시환경과 현대미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 조각/모뉴먼트에 대한 재해석, 장소 특정적 개념의 새로운 전환, 영구설치를 위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며, 일상 환경에서 안양시민과 현대미술의 예기치 못한 만남을 기획하고자 했다. ‘전유 APPROPRIATE’, ‘재생 REGENERATE’, ‘전환 TRANSFORM’ 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안한 2회 프로젝트에서, 초청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을 위해 평촌 도심의 다양한 장소들을 차

용하고, 또 시민들은 일상적 장소에서 현대미술 작품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각각 색다른 방식으로 그 장소를 ‘자기화’ 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공공미술의 의미

공공미술이란 무엇인가? 공공성과 미술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만남에서 공공성의 명확한 규정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미술의 목적이 공공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의 내용 혹은 컨셉트가 공공적인 것을 다룬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라는 개체의 사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공공미술이라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거기서 대중성과 공공성을 찾으려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류는 이에 대한 해답을 현대미술 작품 안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이라는 미술의 형태 혹은 유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 미술은 미술이 탄생하는 외적 조건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미술 그 자체가 공공적인 것이 아니다. 단, 미술이 보여 지는 장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재원이 공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미술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 반향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대미술은 미술관 안에 있든지 밖으로 나오든지 간에 작가들의 발언이다. 이 발언들은 자유로운 것이며, 또 대중을 향한 것이기는 하지만 결코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즉 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발언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가 바로 공공장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이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즉 대중의 현대미술 향유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촌 도심에서 전개된 2회 프로젝트의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다. 평촌 중앙공원 한 쪽 공중전화 박스에서 계속 전화벨이 울린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발길을 멈추고 주변을 살핀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리는 공중전화 박스 문을 조심스레 연다. 누구에게 온 전화일까? 또 한 편에서는 45도로 기울어진 하얀색 전통가옥 앞에서 사람들이 기웃 기웃하고 있다. 들어가도 되는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간 궁금한 게 아니다. 안양시민들과 현대미술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엠그린과 드락셋의 공중전화 박스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의 기울어진 집은 안양시민들에게는 이상야릇하고 신기한 형태다.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자상이나 추상조각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전혀 미술작품 같지 않다. 하지만 상관없지 않는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중전화 박스 문을 열고 들어가 전화를 받아보고, 또 기울어진 집으로 들어가 경사진 바닥에 누워보기도 한다. 물론 이 작품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 의미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읽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작가들은 일차적으로 현대미술과 대중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다. 이 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 2회 프로젝트는 현대미술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의 관객은 남녀노소를 막론한 안양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다. 물론 불특정 다수인 이 시민들의 개인적 취향을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다. 반면 그 어떤 개인 혹은 대중의 취향에 봉사하는 것이 현대미술은 아니다. 현대미술은 대중의 취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수성과 사고를 리드한다. 이렇듯 진보적이고 창의적 사고와 실험적 시도를 보여주는 현대미술이 미술관을 떠나 도심으로 나왔을 때 일반인들에게 외면당할 것인가? 우리는 현명한 작가들을 믿는다. 현명한 작가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특히 그것이 미술관이 아닌 공공장소일 경우 이러한 소통은 작가들에게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이다.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은 흔히 ‘공공미술’이라는 포괄적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공공미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개념의 정의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칭 공공미술은 크게 공공장소 속의 미술(Art in public space), 도시계획과 함께 진행되는 미술(Art in urban design), 커뮤니티를 기반(Community-based Art for social change)으로 한 미술 등으로 구분된다. 물론 이 모두 있기는 하지만 각 유형은 그 목적과 특성 그리고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르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시계획과 함께 진행되는 미술과 공동체 예술은 제외했으며, ‘도심 속의 현대미술’을 핵심으로 하는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로 한정하고, 그 가운데 미술사적 맥락의 전통적 모뉴먼트의 개념과 그 컨텍스트의 이동과 방향전환의 전략을 통한 창작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현대미술 작가들은 공공장소에 ‘구체적 실체(조각, 설치, 오브제...)’를 제안하며, 불특정 다수의 퍼블릭과 현대미술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모뉴먼트 전통적 맥락과 함께 이들의 작품들의 의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가들이 제안하는 공공장소 속의 작품들은 과거, 즉 전통적 맥락의 모뉴먼트

트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이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현대미술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공장소의 모뉴먼트

공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상과 기념비들은 수 백 년 전부터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전형적 공공미술 형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념비’의 전통이 시대와 함께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며 공공장소 속에서 기념비의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왔는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기념비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지역, 나라, 공동의 역사를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물론 이러한 기념비들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기념한다는 ‘주문’과 함께 특정한 장소와 그에 따른 다양한 조건들을 수반한다. 그래서 기념비의 내용과 형태 그리고 주문자와 작가와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장소 속의 기념비 전통은 20세기 미술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길거리에 기마상 혹은 인물 동상을 세우는 대신 작가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표현이 담긴 예술 작품으로서의 조각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 조각들은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작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형태들을 공공장소 속에서 보여주게 된 것이다. 전통적 기념비들만큼이나 무수히 많은 공공장소 속의 조각상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까지도 일부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전통을 답습하고 비슷한 유형을 반복하는 기념비 혹은 조각상들이 아니라 매 시기 전통을 깨고 새로운 형태를 제안하는, 즉 현대미술의 흐름에 ‘정점’들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기념비 전통과 전통 조각상의 해체와 재구성의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미술의 전개는 언제나 전통을 해체하고 그것을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우리에게 색다른 삶의 가능성들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공공장소 속에서 특정 컨텍스트가 현대미술의 새로운 의미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시기는 1960년 중반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 말 현대미술 작가들이 야외에서 작업을 하면서 환경, 컨텍스트, 일상의 이슈들이 작품 탄생과 그 예술적 가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올덴버그, Claes Oldenburg의 1969년도 작품 ‘립스틱’ (Lipstick on Caterpillar Tracks 1969)은 기념비

의 전통을 해체하며 새로운 의미의 ‘모뉴먼트’ 를 제안했다. 바바라 로즈 Barbara Rose는 이 당시 올덴버그가 예일대 캠퍼스에 설치한 거대한 ‘립스틱’ 을 보며 ‘모뉴먼트 인 시튀 Monument in situ’ 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이 개념은 일종의 모뉴먼트에 대한 ‘안티 모뉴먼트’로서의 현대적 모뉴먼트의 새로운 가치를 표방한다. 올덴버그의 ‘립스틱’ 은 예일대 학생들이 그들의 학생시위를 기념하기 위하여 올덴버그에게 주문한 작업이다. 하지만 올덴버그는 학생들이 예상했던 기념비 대신 화려하고 섹시한 대형 립스틱을 캠퍼스에 설치했다. 바바라 로즈는 이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바로 전통적 개념의 기념비에 대한 아이러니를 부각시키며 기념비 가치의 방향을 전환시킨다고 언급했다.(Claes Oldenburg, NY, The Museum of Modern Art, 1970) 모순 혹은 역설의 가치가 기념의 가치를 대신하며 새로운 개념의 ‘모뉴먼트’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 올덴버그는 일상적 오브제들을 확대하여 공공장소에 설치하며 일상이라는 사적 컨텍스트에서 공적 컨텍스트로의 이동을 시도하며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오늘날 공공장소 속의 미술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바바라 로즈의 ‘모뉴먼트 인 시튀’ 개념이 흥미로운 점은, 형식은 ‘모뉴먼트’의 전통에 있으나 그 의미와 가치는 시대적 컨텍스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 연장선에서 탄생하는 공공장소 속의 미술은 특정한 컨텍스트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하는 장소적 당위성은 없다. 반면 그 작품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장소가 특별해지며 새로운 의미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현대적 기념비란 무엇인가?

2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안젤라 블록 Angella Bulloch이 제안한 ‘헌화’는 하나의 컨텍스트를 차용하고 해체하며 그것을 또 다른 컨텍스트로 옮겨와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탄생한 작업이다. 안젤라 블록의 〈헌화 Floral Tribute〉는 독일 작가 이자 겐즈켄 Isa Genzken 의 〈장미 Rose〉 작품에서 출발한다. 이자 겐즈켄은 90년대 초 통독을 기념하기 위하여 거대한 ‘장미’ 한 송이를 라이프치히의 광장에 설치했다. 작가는 이자 겐즈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과 헌화’의 개념을 차용한다. 그리고 기념과 헌화의 개념은 한국의 안양이라는 또 다른 컨텍스트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국화인 목란과 한국의 무궁화 그리고 안양을 대표하는 은행나무가 합쳐진 혼성의 꽃으로 재탄생 되었다. 이

렇듯 이 〈현화〉는 기존의 단일 텍스트가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되어 새로운 컨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혼성적 텍스트로 전환되며 다의적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안젤라 블록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컨텍스트에 사물들이 옮겨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전환되고 생성되는가’ 그리고 ‘변화할 주제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명백한 모순들은 무엇인가’에 주목한다. 작가는 또한 고정된 전망보다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상태와 거기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시각화한다. 이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제안한 〈쿠아트로 Quatro〉란 이름을 가진 레이첼 파인스타인 Rachel Feinstein의 돈키호테 조각상은 원래 친한 친구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며 만들어진 미니어처 조각이다. 스페인어로 ‘쿠아트로’는 숫자 4를 의미하며 동시에 스페인의 전통 악기의 이름이기도 하다. 인생을 시작하는 소년의 이름(레오폴드 4세)을 반영한 자그마한 〈쿠아트로〉는 안양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축원하며 이상과 열정이 충만한 오랜 여정을 약속하는 미래지향적 ‘기념비’로 재탄생 되었다. 이 작품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며 각기 다른 컨텍스트에서 ‘기념’과 ‘축제’를 상징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재생되고 활성화되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의미들을 생산하게 된다. 돈키호테는 소설, 영화, 동화 등 다양한 예술형태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인물이며, 이상적 삶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는 범세계적 인간상이다. 〈쿠아트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지역 컨텍스트를 초월하여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기마상으로 재생 된다는 점이며, 동시에 이 기념비라는 정통기마상 형식을 고집함으로써 ‘기념비’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재구성하고 있다.

사회가 제도화한 언어적 관습과 태도 그리고 문화적 의미의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김홍석의 작업은 안양시가 사용하는 홍보 슬로건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를 상징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문구로 자신을 의미화 한다. 이러한 문구는 표현 방식만 달리 할 뿐 대부분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강조한다. 작가는 이러한 상투적 문구를 차용하고 안양에 대입시키지만, 그 문장을 360도 회전시켜 누군가 이야기해 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추상조각을 제안한다. 도시를 상징하는 관행적 문구는 본질적 기의가 제거된 공허한 기표이다. 도시 이미지는 단순히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작가는 선언되는 상투적 기표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조형적 실험을 통해서 도시에 대한 새로운 기의를 생산해내고자 한다.

1992년 마티아스 아우구스티니악과 미셸 암잘락, 두 명의 파트너 씽으로 구성된 엠/엠(파리) M/M(Paris)는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예술과 커뮤니케이션의 본질과 그 범주를 넓히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그들의 제안은 ‘살기 좋은 도시 안양, 산과 물, 평온과 조화를 이룬다. 희망과 밝은 미래가 여기에 있다.’ 라는 영문 슬로건이 새겨진 17개의 거대한 타워들로 구성된다. 그들이 느끼고 본 신도시는 이성과 논리로부터 출발하고 계획된 도시였다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이성이 빚겨간 혼동과 광기의 도시로 다가왔다. 머리로 사고하며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자 했던 모더니즘적 구축정신의 결과 앞에서 작가는 이성적 비판을 뒤로하고 가슴으로 고민하고 감정으로 사고하며 자신들이 느낀 이성의 ‘광기’에 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안양에서 이상적 도시계획과 일상적 삶의 괴리를 느낀 작가의 애정 어린 애잔한 감정은 관광 안내서에 적혀 있는 슬로건에 고정되었다. 잠시 안양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서와 슬로건은 피상적이기는 하지만 안양을 느끼고 알게 되는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는 안양 방문 시 구입한 서예도구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서에 명기된 슬로건을 그림문자 서체로 그려나갔다. 안양 홍보 슬로건의 피상적 의미가 개인화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작가의 개인적 감정이 변안되어 다시 태어난 ‘슬로건’은 신도시의 거대한 풍경에 걸맞게 17개의 타워들로 제작되었다.

어떻게 기억을 소통하고 공유할 것인가?

예술과 현실의 ‘경계’와 ‘차이’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베르트랑 라비에 Bertrand Lavier 작업은 보기 드문 명석함과 재치로 일상의 오브제들과 예술에 대한 개념의 방향전환을 시도한다. 베르트랑 라비에에는 ‘회화’와 ‘조각’에 대한 전통적 개념의 정의와 코드를 재구성 혹은 해체하며 예술의 전통과 현재의 관계를 가시화하고 그 본질을 역설적 방법으로 부각시킨다. 그의 작품에서 회화는 조각이 되기도 하고 조각이 회화가 되기도 하며, 동시에 일상적 오브제가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며 예술작품이 일상적 오브제가 되기도 한다. 베르트랑 라비에의 이러한 미술의 본질과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왕복운동은 예술과 현실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방해하며 이러한 혼동과 동요의 영역으로 유도하여 우리의 고정된 인식체계를 전환시킨다. 작가가 선택한 소비산업사회의 다양한 생산품들인 일상의 오브제들은 확장, 전이, 겹치기 등의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예술적 아이콘으로 변환된다. 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사용하는 농업용 탈곡기와 조립식 창고가 연결된 작업이다. 베르트랑 라비에의 ‘오브제 위에 오브제’ 방식인 이 작품의 제목은 농업용 탈곡기 브랜드인 ‘맥코믹’ 과 조립식 창고 브랜드인 ‘삭소’ 로 구성된다. 안양 자유공원에 우뚝 서 있는 베르트랑 라비에의 ‘맥코믹/삭소’ 는 근대화 과정의 기반 산업인 농업과 공업을 거쳐 3차 산업 시대를 지나 광통신과 글로벌 네트워킹의 시대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을 상징하는 기념비로 재탄생 된다.

엠그린과 드락셋, Elmgreen&Dragset의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는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 속에서 잊혀져 가는 공중전화 부스의 사회적 기능을 호명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코드에 의거한 개개인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촌 중앙공원 한쪽에 설치된 공중전화 부스에서 지속적으로 울리는 전화 벨소리는 우리에게 결코 익숙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신인이 부재하는 공중전화 부스 문을 열고 수화기를 들기까지 개인적 호기심과 사회문화적 규범 사이에서 망설이게 된다.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는 우리가 이러한 망설임 끝에 수화기를 들면 듣게 되는 익명의 목소리다. 이렇듯 엠그린과 드락셋의 ‘공중전화 박스’ 는 본래의 기능은 상실되면서 또 다른 컨텍스트를 생산한다. 즉 일상적 삶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돌출시키면서, 개개인의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 이념, 규범에 가려진 개인의 자율적 행동과 욕망을 소통하는 도구로 재생된다.

리암 길릭 Liam Gillick의 작업세계는 개인과 현대사회의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파워의 상호교류에 관한 복합적이며 지속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다. 리암 길릭의 텍스트는 픽션과 현실 사이에서 이러한 담론이 형성되고 작동할 수 있는 일종의 환경이며, 그의 작품들, 즉 사회적 구조물, 코퍼레이트 사무실, 행정자치구, 바, 로비 등은 그가 텍스트에서 제안한 건축적 기호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 상황’ 이다. 리암 길릭이 제안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과 현실의 괴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성, 개인과 집단과의 지배적 관계, 그리고 사회를 지배하는 모든 거대 담론과 이념적 파워들의 실체를 인식하고 그것과 소통하며 또 다른 ‘유연한 이념’ 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 ‘안양 광장을 위한 사회적 구조물의 제안’ 은 기능적 장소에 사회적 잠재력을 가진 구조물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실제 크기 사회적 모델이다. 철빔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끊임없이 교차하며 쌓아올려진 노란색 거대한 구조물은 지나

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벤치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시청 앞 인도에 설치되는 이 작품은 계획된 신도시의 사회 문화적 일상적 컨텍스트의 방향 전환을 유도하며 지역 구성원들이 이 구조물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물리적 장소에서 사회적 컨텍스트로

다니엘 뷔렌 Dael Buren의 ‘시각적 도구’ 이자 ‘공간 비평 도구’ 인 8.7cm 수직 띠와 인 시튀 in situ는 특정한 건축, 환경, 공간에 개입하며 관객이 인식하지 못했던 건축과 환경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시화한다. 다니엘 뷔렌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의 건축 혹은 환경에 개입한다는 것은 장소와 관련된 컨텍스트에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컨텍스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 건축과 환경을 활용하는 거주자들의 존재와 삶을 함축하게 되며, 시간적이며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게 된다. APAP 2007을 위해 다니엘 뷔렌은 평촌 셋별1로에 위치한 ‘기존 장미넝쿨 터널’ 자리에 다양한 색유리로 구성된 <오색찬란한 하늘아래 길> 페르골라를 제안했다. 페르골라는 보행자들을 위하여 터널 형식으로 보도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무엇보다도 셋별1로를 매일 활용하는 거주자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색채 환경을 경험하게 하는 환경이 될 것이며, 오색찬란한 색들이 투과되어 보행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변 환경을 ‘색과 빛’ 이 가득 찬 ‘하늘 아래 유일한 감성적 공간’ 으로 전환시킨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양혜규는 평촌의 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진 어린이 공원에 주목한다. 어린이 공원은 지역 주민들의 녹지 확보와 쉼터로써 기능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공용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다르게 평촌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은 평촌이 계획되면서 적용된 하나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지역 구성원들에 의해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만들어 질 수 있었던 이 공간은 무표정하게 평촌의 아파트 단지에 존재하거나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작가는 이렇게 의미화 된 평촌의 어린이 공원에 개입한다. 작가의 개입 방식은 낡은 정자에 새로운 천정화를 그려 넣거나(9호 공원) 따로 떨어져 있는 벤치를 연결하거나(15호 공원) 혹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3개월 단위로 흑색에서 백색으로 다시 칠하는 식이다(17호 공원). 더욱이 어린이 공원의 화장실에 부착된 거울에 센서를

달아 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거울 속에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했다(9호, 15호, 18호 공원). 우리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순간 거울은 또 다른 세계로 다가서게 되는 문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어린이 공원에 최소한의 오브제를 설치하여 지역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작품 제목을 <공기놀이>라고 한 것도 공깃돌이 흩어 뿌러지면서 놀이가 시작되듯이 작가가 뿌려놓은 작은 오브제들을 매개로 개인의 작은 이야기들이 신비롭게 만들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프레드 페르니스 Manfred Pernice는 조각과 건축을 통해 독립된 이상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기보다 조각과 건축이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관찰한다. 대부분의 조각가와 건축가들이 미학적 혹은 사회적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오히려 불완전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 따라서 작가는 공적 공간이 갖는 의미들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생성하고자 한다. 작가는 평촌이라는 신도시를 구성하는 환경 디자인의 결과를 전유하면서 지역 구성원들이 기대하는 (공공)예술과 동시대 미술의 간격을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APAP 2007에 제안했다. 작가는 평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원과 광장이라는 공적 공간 내부에서 주변화된 장소 두 곳을 발견했다. 이곳은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보잘 것 없는 휴식처인 까닭에 존재감이 잘 각인되지 않지만, 부담 없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한 장소이다. 작가는 이곳에 평촌의 공공 시설물의 디자인 개념을 확장시킨 장소 특정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기념비적 조각품을 설치한다. 시민들에게 익숙하지만 각인되지 않았던 이 장소는 작가의 소박한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개입을 통해서 미학적으로 확장되며 공간의 재생을 유도한다. 작고 후미진 공간이긴 하지만, 작가는 이곳을 헤르만 헤세가 영원의 안식처로 삼아 노년을 보냈던 루가노로 명명함으로써 지역구성원의 소박한 안식처로 사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을 맺으면서

20세기 중반에 들어 공공장소는 미술관, 화랑 그 밖의 전시공간이 아닌 일상생활 공간에서 작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들을 허용하는 일종의 '제도'로서 자리를 잡았다. 공공장소는 오늘날 작가들에게 그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전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미술

의 전개에 있어서 작가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컨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입장과 그 이동 및 방향전환의 전략은 단순히 공공장소 속의 조각 혹은 모뉴먼트에 고정되지 않는다. 이들의 작품들은 이러한 창작 전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서 기존 가치와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삶의 가능성들을 제안한다. 현대미술과 공공장소의 만남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미술제도 공간 보다 더욱 더 직접적이고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 물론 때로는 부정과 대립과 충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보다 빠르고 긍정적인 수용이 있기도 할 것이다. 공공장소 속의 현대미술은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재생되며,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일상을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전환시키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가와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도시(안양 평촌)에 대한 예술적 전유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일상과 환경을 재생하고, 안양시가 갖고 있는 기존 도시 컨텍스트(서울 근교, 베드타운)를 새로운 내러티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했다.

본 연구는 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준비과정에서 필자가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텍스트들을 부분발췌하고 재집필한 것이다.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4

주 제 발 표

문화환경과 혁신도시 - 공진화의 비전과 발전의 논리

라도삼 _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문화환경과 혁신도시 : 공진화의 비전과 발전의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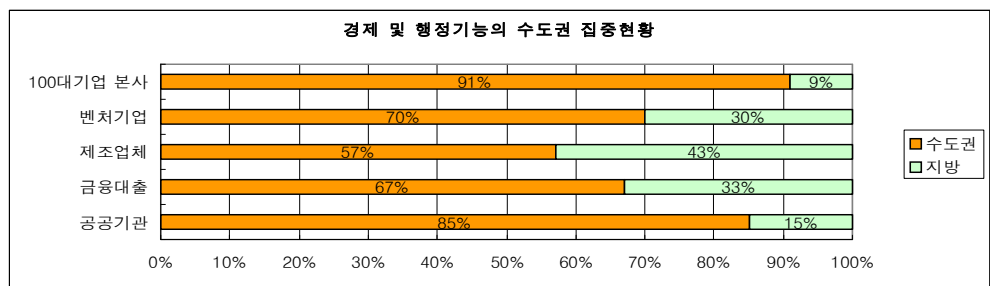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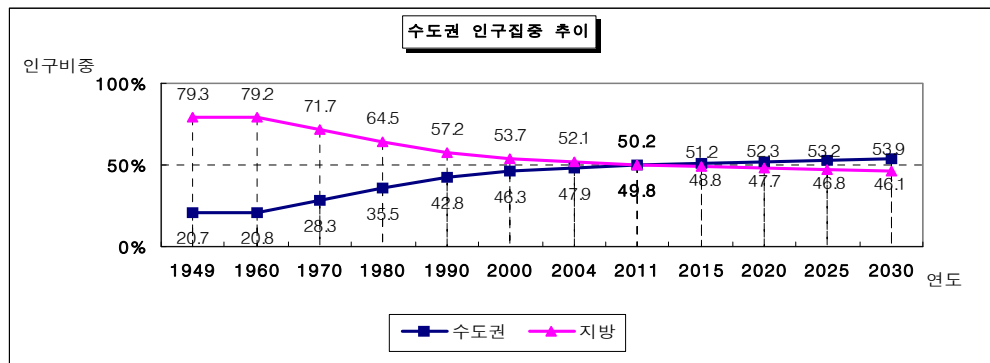
라도삼 _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혁신도시와 공공예술, 왜 접합이 필요한가?

1. 오늘 발제를 담당한 주제는 정확히 말해 ‘문화환경으로서 혁신도시의 비전과 가능성’이다. 문화환경 측면에서 혁신도시가 어떤 의미와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 또 그 가능성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오늘 이 발제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다.
2. 얼핏보면, 혁신도시와 문화환경은 큰 관계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대한 다양한 문건을 살펴봐도, 문화환경에 대해, 문화환경을 주목하는 문건은 거의 없다. 혁신도시의 설계지침을 담은 『혁신도시 계획기준』이란 보고서(건설교통부, 2007.4.)를 보더라도, 문화환경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없으며, 다만, 제10절 내 ‘공공·교육·문화·복지 및 가족친화시설계획’ 내 포함되어 다루어져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내용도 생활중심의 문화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거나 필요시 미술관, 박물관, 전문공연장 등을 설립할 수 있다는 수준 정도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와 문화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3. 혁신도시와 문화환경이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혁신도시가 갖는 의미론적 측면에서다.
4. 의미론적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배경으로 형성된 도시를 말한

다.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혁신도시란 바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형성된 도시를 말하며, 그 자체가 혁신성을 갖춘 도시이자 해당 지방(지역)의 혁신을 위해 형성된 도시를 말한다.

5. 이와 같은 혁신도시의 구성 필요성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간 균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있다. 즉,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를 분산하여 지역 간 균형을 형성한다는 게 혁신도시 조성의 목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한 2005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란 보고서(건교부 외, 2005. 6.)에 따르면, 당시 수도권은 지방보다 많은 전체 인구의 53.9%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6. 문화적 측면에서 또한 혁신도시는 같은 측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수도권으로 과밀된 문화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지방에 균등감있게 배분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주요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각 지역마다 새로운 (균형을 위한)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문화의 측면 또한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전국적인 균형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각 지

역의 문화가 발현되도록 할 것인가' 를 문제삼는 것이다.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예술단체 중 50.2%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70%에 가까운 예술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그 수준을 엄밀히 해, 횡수가 아닌 질적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방은 아마 문화적 접근성과 우리나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 크게 위축된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

예술분야 수도권(서울) 밀집도

구분	단체	활동				
		시각	국악	양악	연극	무용
밀집도	50.2	65.7	57.4	40.9	67.7	67.7

*국악과 양악, 연극 등은 서울만 계상함.

*출처: <2010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2010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1

7. 다른 한편, 문화환경은 혁신도시 자체가 갖는 도시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익히 알다시피 혁신도시는 대부분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다. 그리고 그 도시는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때문에 도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주성'에 관한 문제다. 혼자서 거주할 것인가 가족이 거주할 것인가? 아니면 거주없이 출퇴근만 할 것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혁신도시는 말그대로 지역을 혁신하는 도시로 기능할 수도, 아니면 그냥말로 기관만 이전한 도시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많은 무리를 두고서도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혁신도시는 단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혁신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의 부족분을 채우고, 새로운 발전의 기반 및 계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계획기준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스스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을 갖춘,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 (『혁신도시 계획기준』, 건설교통부, 2007.4.)로 조성되어야 한다. 때문에 도시의 환경은, 혁신도시 자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매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9.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단지 지방으로 기관이동이라는 기능성이 아닌, 그 자체의 미학과 문화적 특성-고유성-을 갖춘 도시로 건립되어야 한다. 단지 건

물과 기관이 결합된 도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문화성과 미학을 갖춘 도시로 건립되어야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 다른 한편, 혁신도시는 오늘날 말하는 창조성의 측면에서 문화적 아우라를 갖추고 창조적 인구를 유입함은 물론, 관련된 문화와 콘텐츠, 산업 등을 유지하여 지역을 혁신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화 된 환경으로 정주성을 갖추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야만 혁신 도시는 혁신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인 균형발전과 접근성 제고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혁신도시와 문화환경 사이엔 공진화의 관계가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혁신도시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혁신을 위해 건설된 도시니만큼 혁신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진화의 관계 1 : 문화적 측면

11. 세계적인 도시발전 및 비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도시는 분명 위험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미래 도시의 비전을 거대한 메갈로폴리스로 분산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 세계가 몇 개의 메갈로폴리스로 나뉘질 것이며, 대다수의 도시는 그 아래 속한 위성도시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12. 다른 한편에서 혁신도시는 산업측면에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산업이란 익히 알다시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강한 네트워크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다. 때문에 클러스터의 구성이 중요한데, 혁신도시는 이 중심을 이전함으로써 전국적인 산업분산 효과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클러스터가 붕괴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지역균형을 고려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겠다는 것이 혁신도시의 전략이다.
13. 도시의 측면에서 또한 혁신도시는 그다지 좋은 전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새로 도시를 건설하고, 기관을 이전시킨다는 점이 그렇다. 때문에

이 도시가 기존 도시와 제대로 융합되지 않는 한, 혁신도시는 혁신의 한복판이 아닌 이질감을 형성하는 주요인이자 계획적으로 설계된 인위적 도시에 불과할 뿐이다.

혁신도시 추진현황

도시	이전대상	이전기관	위치	전략
부산	해양수산, 금융, 영화진흥	13	동삼지구(해양), 문현지구(금융), 센텀지구(영화), 대연지구(공동지구) 등 4개 지구로 조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	11	동구 신서동 일원	Brain City
광주/전남	전력산업, 정보통신, 농업기반	15	전남/나주	Green Energygia
울산	에너지 산업, 노동복지	11	중구 우정동	Energy Policy
강원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12	원주시 반곡동	Vitamin City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11	진천군/음성군	Techno Polis
전북	국토개발, 농업생명	12	전주시, 완주군	Agricon City
경북	도로교통, 농업지원	13	김천시	Dream Valley
경남	주택건설, 산업지원	12	진주시	River Front Inno City

14.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밀성에 대한 피해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측면에서 또한 이 과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15.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의 측면에서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서비스인 한 접근에 있어 취약성이 없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고, △다른 한편은 우리의 문화를 구성하는 틀 내에 각 지역의 문화가 균형감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이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문화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서비스)하고 있고, 서울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를 대표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16. 서울 중심의 활동과 문화적 대표성의 존재는 문화가 갖는 특질로부터 존재한다. 문화란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 특정한 지역에 밀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째, 늘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늘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에 관련된 자원이나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활동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늘 혁신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 문화란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밀집을 중시하는 경향을 갖는데,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는 여건 상,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지역을 코드화 함으

로써 관련된 관객 및 소비인구를 밀집시키는 효과를 지향한다. 즉, 특정 지역에 밀집함으로써 지역을 기호화하고, 관련된 인구를 유입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7. 본 연구자가 2010년 연구한 결과 이러한 문화적 특화지역은 비교적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도시설의 위치 여부, 첨단 문화와 유행의 형성, 안정적인 고객과 소비계층의 형성, 관련된 산업의 클러스터 형성,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보유 등이 주요한 특화의 요인으로 분류된 것이다. (라도삼, <문화특화지역 형성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구, 20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서 모든 자원이 밀집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을 지배하는 이벤트와 특화가능한 도시여건-기반만 갖추고 있다면, 당해도시는 문화적으로 특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문화특화지역 형성유형

입지지역	이유	사례
선도시설 지역	선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미지 및 관련시장의 형성 *우리의 경우, 선도시설이 산 등과 같이 고립된 지역에 있다는 게 문제	서초동 악기상가, 대학로 <문예회관>주변 공연장, <리움>주변 한남동 지역 등
첨단의 문화/유행	늘 혁신을 고려해야 하는 재화의 특성 상 선도적인 문화와 유행이 형성된 지역에 집중	압구정, 신사동 지역 등
안정적 고객	보편적 국민보다는 관련된 자본을 축적하고 구매가능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형성	평창동, 압구정 지역 등
관련 클러스터	연관된 산업이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충무로 영화산업, 인사동 화랑 등
매력적 도시경관	자연경관이나 건축, 가로의 패턴 등 문화적 경관성을 갖춘 지역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18.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여건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그 어떤 지역이든 밀집의 여건 및 자율적인 생태(네트워크)여건(클러스터)을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예술단체 있어 지방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는 △적당한 규모의 관람인구가 없어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 △협업하거나 혁신할 수 있는 경쟁집단이나 자극이 없다는 점, △마땅한 시설이나 기반이 없다는 점 등이 존재한다. 통계에 의하면, 서울 소재 예술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8.9%인데 반해, 강원도 지역 예술단체는 36.5%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예술단체 재정자립도는 2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인구수가 부족한 점, 특히 예술관람의 욕구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자본’ 을 축적한 인구가 적다는 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을 어렵게 한다.

공연단체 재정자립도

(단위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자립도	58.9	44.6	55.2	63.8	44.1	44.7	25.2	34.6	50.7

*출처 : <2010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2011,p.87에서 임의로 추출

19.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혁신도시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혁신도시를 통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시설-선도시설과 전문시설-을 갖추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접근성의 기회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 ‘문화적 자본’ 을 축적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계층을 전국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맹아적 형태의 예술시장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매력적인 장소와 경관성을 지닌 지역을 발굴하거나 예술가의 창작이나 실연을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건립, 예술창작의 가능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혁신도시의 전략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집중화 된 생산과 유통, 소비의 네트워크를 지방으로 순환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역이 고유화·정체된 형태의 문화를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진화의 관계 2 : (혁신)도시적 측면

2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추진된 배경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이 깔려 있다. 이것이 이상이라면 현실로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각 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관련된 산업네트워크가 이전해 각 지역이 해당산업으로 특화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그로 인해 국토가 특화된 형태로 발전하는 균형적 상태를 이루어야 한다.

21.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 필요한 것은 각 도시가 실제 기관이 이전하고, 그곳에 정주할만한 조건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다. 즉,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닌, 실제 관련된 인구들이 정주하고, 관련된 산업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혁신도시 건립안을 보면, 수립지침 ‘계획수립의 원칙’ 5항에 “정주 및 혁신공간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형태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에 대한 보전·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한다”(혁신도시 계획기준, 건설교통부, 2007)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실제 정주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22. 한 도시가 정주여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중 핵심적인 조건은 행정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의 5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 요소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를 수혜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있거나 이동해야 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설적으로 그것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갖는 이유다.
23.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으로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즉 교육과 의료 등의 각 분야에 있어 노력이 필요하며, 문화 또한 동일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문화측면에서 혁신도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24. 실제 문화가 도시 또는 지역발전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다. <매킨지컨설팅>이 뉴욕주 예술지원기구인 <Alliance for the Arts>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의 예술이 뉴욕주에 있어 갖는 가치는 경제적 효과 외 시민적 이익과 공동체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Keinsey & Alliance for the Arts, <Cultural Capital; Investing in New York's Economic and Social Healty>. 2002)

문화예술이 뉴욕 주 경제에 미친 효과

항 목	내 용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45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 : 비영리문화단체 발생수의 57억 달러, 영리단체 발생수의 88억 달러 - 초기투자비용의 2배가 넘는 조세수입발생 - 뉴욕시 지원의 5배가 넘는 민간기부 촉발 - 비영리적인 문화산업으로 인해 연간 최소 1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 뉴욕(Newyork)에서만 매년 1천2백만 달러 세수 발생 및 경제활성화 유발
시민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li style="padding-left: 20px;">: 시민 중 49% 이상 뮤지컬 관람, 43% 이상이 예술전시회나 박물관 관람, 36% 이상이 극장 관람 <li style="padding-left: 20px;">: 시민 중 80%가 전년보다 문화예술을 관람하길 원함 -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복돋우며, 창의성을 활성화시키고, 이웃간의 교류 증대
직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련 부문에서 13만개의 일자리 창출 - 문화관련 비영리부문에서 약 5만개의 일자리 창출 - <포춘>지에 의해 2000년 '창의적 자본' (creative capital)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선정 - 예술은 고용을 촉진하며, 노동자의 창의적인 재능을 끌어올림
공동체의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간의 관계 재활성화 - 9.11사태의 비극으로부터 뉴욕시민들이 벗어나도록 함

25. 다른 한편, 루크 리트너(Luke Rittner)는 자신의 저서 <도시의 르네상스>(영국예술위원회, 1989)에서 문화환경이 갖는 효과를 “도시의 건축과 삶의 질이 전국민적인 토론 주제가 되고, 도시의 재활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문화환경은 사업에 대한 확신을 회복시키고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며,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자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삼철 옮김,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교재, 2000)

26. 필자는 여러 학자 및 사례들의 결과를 수집하여, 문화환경이 지역에 갖는 가치를 연구한 바 있는데, 대체로 문화환경은 경제적 효과와 지역의 재생과 정비 효과를 나타내며,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의 강화, 지역 이미지의 개선 효과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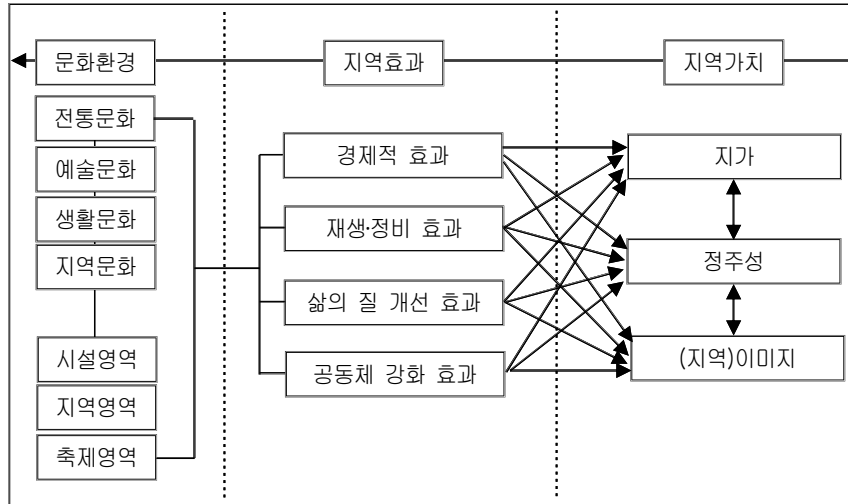
문화환경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례	지역효과
캐나다 창의도시네트워크	▷경제적 효과, ▷도시재생과 활성화, ▷공동체 강화, ▷지역에 대한 긍지, ▷삶의 질 개선, ▷장소의 질, ▷사회적 발달
예술을 위한 1%	▷장소화 효과, ▷예술감상 기회 제공, ▷지역 정체성 강화, ▷이미지 가치제고, ▷경제적 효과, ▷공동체의 유대와 강화
도시르네상스	▷경제적 효과, ▷환경개선, ▷주민참여 유도, ▷공동체 강화, ▷지역정체성 제고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한국)	▷정신적 빈곤의 해소, ▷지역개발 효과, ▷문화민주주의 실현에 기여, ▷지역정체성 강화,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의 강화, ▷삶의 질 향상
뉴욕사례 (매킨지 컨설팅)	▷경제적 효과, ▷지역이미지 개선,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개인창의성 강화, ▷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 간 관계 형성
빌바오 구겐하임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증대,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에 대한 긍지
테이트 모던	▷경제적 효과, ▷고용효과,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미지 개선, ▷예술향수권 제고, ▷공동체 강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강화
에든버러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이미지 개선
YBC프로젝트	▷관광객 증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이미지 개선
헤이타운	▷관광객 증가, ▷지역이미지 형성
골목길 프로젝트	▷주민 간 관계개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소속감 부여
페컴 도서관	▷지역이미지 개선, ▷문화접근성 증대
딕백스 지역	▷지역활성화, ▷예술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재생
볼티모어	▷관광객 증가, ▷도시이미지 변화, ▷범죄율 하락(지역환경 개선), ▷정주성 강화
시드니	▷관광효과, ▷지역이미지 창출

*출처 : 라도삼,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6

27. 그 결과에 따라 필자는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지가 및 정주성 제고, 지역이미지 혁신 등으로 나누고, 공공예술 및 문화적인 지역형성, 문화시설 건립 등을 놓고 조사한 바 있는데, 지역이미지 개선>정주성의 강화>지가의 상승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문화환경은 경제적 효과 및 지역을 재생·정비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공동체를 강화, 지역이미지를 개선하며, 정주성을 높이고, 지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지역이미지 개선>정주성 강화>지가상승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화환경이 지역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모델

28. 그렇다면, 혁신도시를 건립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논리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각 기관이 이전된 말 그대로 기관들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들이 소재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위치하며, 정주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도시는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기관을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라 각 도시를 문화적인 거점과 핵심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혁신도시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 전략

29. 혁신도시가 혁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가 정주를 위한 환경과 더불어 해당 지역을 혁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30. 첫째, 지역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성 고양을 위해서 부족한 문화시설과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해야 한다. 즉, 현재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편중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시

기에 맞춰 그에 적절한 시설과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조성계획을 살펴보면, 그 시설과 기반여건은 △주민 일상생활 시설인 문화의집과 주민생활체육시설(실내 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근린도서관, 공연장 등을 수요에 맞게 건립할 것과, 이런 시설들을 건립함에 있어 통합적·복합적으로 건립할 것, 더불어 도시전체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미술관 및 박물관, 전문공연장, 종합운동장 등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혁신도시계획기준 제10절의 3문화시설, 건교부, 2007).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말 그대로 혁신도시를 위해서만 이다. 이와 같이 소극적 차원에서 건립될 경우, 혁신도시는 혁신성보다는 기관의 도시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31. 둘째, 각 도시는 매력적인 경관성과 가치를 가진 도시로 건립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자원(사람 및 단체 등)은 선도적인 도시에 밀집하는 한편, 매력적인 경관성과 미학성을 갖춘 지역에 밀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장성이 약한 지방도시의 경우, 선도성보다는 매력적인 경관성, 생활의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예술자원이 밀집하는 경향을 갖는다. 때문에 혁신도시는 도시의 경관성과 생활편의적 측면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32.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 이와 같은 지역의 보전 및 발굴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도시마다 옛 문화의 흔적을 지닌 도심지역을 보전하는 한편, 보다 창조적인 문화환경을 갖춘 지역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뉴욕의 경우, 새롭게 조성하는 ‘로우 맨하탄’ 지역을 창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한편, 예술활동에 필요한 문화시설과 컴팩트한 환경, 질 높은 교육과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 또한 창조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수월성(excellence)과 창조성, 접근성, 가치 등을 핵심으로 담은 세계문화수도 전략(London Cultural capital Realising the potential of a world-class city)을 수립한 바 있다 (라도삼·조아라,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창조계층이 선호하는 로우 맨하탄 재건방안

범주	창조계층 선호 도시	로우 맨하탄 재건 방향
쾌적 환경 조성	창조적 노동자는 관광객처럼 도시를 활보	살고 일하고 배우고 노는 경계 희미. 소비, 경험, 오락의 도시
문화시설 예술활동	창조계층은 바쁜 일정에 참여가능한 오락 선호	공원, 자전거 보행자 도로 등 매력적인 도시 건설
주택공급	임대료가 비싸도 창조계층은 기꺼이 비용 지불	더 많은 주택·빌딩 건설 필수
Compact City	모든 것이 가까이에 있어서 시간절약 가능한 도시	혼합용도지구 개발 도모
질 높은 교육환경	대학은 기술생산자, 인재 유인장소, 창조적 시대 주요 토대	대학·기관간 창조적 상호작용 강화. 새로운 동맹 뿌리내림
교통여건	통근시간 업무 또는 휴식 가능한 빠른 운송수단	철도, 수상교통 개발

*자료: Rivlin, A. & Scanlon, R., 2002, Economic Development Working Group Report:
Prepared for the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34.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혁신도시 또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도시를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들은 컨셉화 된 신도시 형태로 건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는 상징물과 디자인 통합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 대부분은 유리건물 형태로 이루어진, 기관의 기능 수용에 초점이 맞춰진 양상이다.
35. 보다 더 미래지향적 도시, 특히 전국토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적 역량이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를 건립한다면, 각 도시는 △관련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의 전달과 △예술관련 자원의 밀집과 공존을 위한 전략, △그리고 도시의 미래와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컨셉화 된 형태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보편적인 예술서비스가 전달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지역의 예술이 발현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한편, 창조적 인력이 밀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갖춘 도시로 건립되어야만, 창조적 역량을 갖춘 혁신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36. 혁신도시의 보편적 예술서비스 환경 및 창조적 환경조성이란 측면에서 공공예술이 갖는 가치는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공공예술전략은 도시의 상징성과 거리의 미관성을 제고, 도시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성을 제고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것은 미학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 예술가의 유입을 강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조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예술위원회>가 발간한 『예술을 위한 1%』(1991)에 따르면, 공공예술이 갖는 효과는 “장소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며, 일반 대중이 현대 미술과 공예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하나의 건물이나 공동체의 서로 다른 부분을 통합하고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며, 도시, 국가, 회사의 미술투자를 증대시키고, 시각환경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경제적 재건의 여건을 개선한다고 한다. 더불어 미술가, 공예가, 조직자, 재료공급자 및 제작자, 운송업자등의 취업영역을 넓히며, 건축, 조경,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등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가와 미술가들의 유대를 강화한다” 라고 말한다.

(박삼철,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학교재, 2000 재인용)

37. 그런 점에서 그것은 계획적이고 통합적으로 조정되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즉, 각 개별적인 건물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장식물이 아니라, 도시의 발전 측면에서 도시의 매력과 혁신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돼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술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가 세계적인 창조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의 ‘게이츠 헤드’ (Gatehead)는 도시의 상징을 만드는 ‘북쪽의 천사’로부터 도시를 혁신하는 예술-문화프로젝트로 세계적인 창조도시가 되었으며, 스페인 북쪽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의 테러도시인 빌바오(Bilbao) 또한 도시의 상징을 재편하는 ‘구겐하임’ 프로젝트를 통해 오늘날 세계에 통용되는 문화도시가 되었다. 것처럼 우리 또한 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통해 도시를 건설해야만 혁신도시는 그야말로 혁신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38. 혁신도시는 혁신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를 위해서는 실제 혁신성을 갖추고, 지역을 혁신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유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9. 그러나 현재의 혁신도시는, 문화환경 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나 부족하고, 단일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강하다. 도시의 정주성 및 혁신성을 추진하는 핵

심적 요소인 문화적 측면에서의 ‘혁신성’ 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은 기능성을 수용한 형태의 소극적·비전문가적 접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도 도시의 혁신성도, 지역의 혁신성도, 문화체계 상 갖는 서울-지방 간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혁신도 이를 수 없을 것이다.

40.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혁신도시는 각 지역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혁신하는 창구로 역할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가 결집되고, 발현되는 한편,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창(窓)으로서 혁신도시는 역할해야 한다. 바로 △각 지역별로 고유성을 발전시키는 계획, △상징성을 제고하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의 문화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계획, △각 도시가 자발적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 등이 수반되어야만, 혁신도시는 지역과 문화를 혁신하는 도시이자,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적 관계를 혁신하는, 본래 도시형성의 배경 및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될 것이다.
41. 그런 점에서 향후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통합화 된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고,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5

주 제 발 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조경진 _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조경진 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제1장 시작하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1972년¹⁾에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공공미술은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제도 역시 진화해왔다. 2010년 현재 총 11,962건의 미술작품이 설치되었으며, 누적 설치금액은 약 7,276억원에 이르고, 1개당 평균 작품비가 1억 정도에 달한다.²⁾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공미술은 문화 환경의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는데 기여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문제점과 한계 역시 노정해왔다. 도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미흡했고, 설치 과정에서 장소만의 고유한 조건을 담아내어 그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2011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의 시행을 통한 선택적 기금제의 도입으로 공공미술의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보다 도시적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기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더불어 생활공간 속에 긴밀하게 결합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지역의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직한 공공미술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도시계획 및 설계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러 차원의 계획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어야 하며 여러 분야가 협력해야 하는 것도 좋은 공공미술의 선결조건이다.

1) 1972년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다. 1995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법에서 의무사항을 개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하였다. 2011년 5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공공미술 개념과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여 개정되어 1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2011년 11월 18일 문화예술위원회 내부 회의 자료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전략을 논의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제언에 초점을 맞추지만,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델사례 제시를 위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사례로 다루고자 한다. 기성도시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공공미술에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실현의 가능성에서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파급력이 크지 않다.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도시가 일시에 형성되는 것 이란 점에서 혁신도시는 새로운 공공미술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된다. 특히 혁신도시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들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공공미술 좋은 시범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사례로 협력적으로 계획하는 공공미술이 제시하는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 프로세스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 계획이지만 이는 혁신 도시 미래상의 공유함으로써 공공미술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제2장 도시계획과 공공미술 통합 및 연계 추진의 필요성

건축물 미술장식품제도는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고, 이 후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이 800~1200점 정도가 설치되고 있다. 1%법은 예술의 일상화를 실현하고,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를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조형언어와 재료가 반복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시행과정의 불공정성도 문제시되어 왔다.

기존의 공공미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장소성의 부재로서 공공미술이 주변 장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장식품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결여이다. 소통이 결여된 일방적인 공공미술의 작품 설치의 주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공공미술이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음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미술은 장소와 부합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공공미술은 지역의 생태, 역사문화적 내러티브를 담고, 주변 컨텍스트를 반영하여 스토리가 있는 도시를 변화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미술과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 커뮤니티적 차원에서 통합 기획된 공공미술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히 커

뮤니티 의식을 고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공공미술은 도시브랜드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미술은 도시의 대표이미지로 활용될 수 있거나, 장소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될 때 그 가치는 증대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은 도시계획이나 도시 문화기획과 긴밀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부 좋은 시도도 있어 왔다. 2006-2007년의 문화체육관광부의 Art in City는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이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갤러리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쉽게 생활공간에서 예술작품을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진행되고 있는 안양예술공원 역시 건축, 예술, 디자인, 조경 등이 결합된 융합형 공공미술의 좋은 사례이다.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광주폴리도 공공미술과 도시 공공공간과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들은 일시적 이벤트이거나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그 사회적 임팩트는 아직 크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 건축주가 개별 부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대신하여 문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렇게 출연된 기금을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개별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의 전면이나 앞마당에만 작품을 설치하였다면, 이제는 기금을 통해 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³⁾ 이는 앞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의 기획과 구현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해외도시사례

1. 도시공공공간의 결합한 공공미술, 시카고

시카고의 밀레니엄파크는 2004년에 오픈한 복합문화공공공간이다. 공원의 면적은 2,200개의 주차공간을 포함한 24.5에이커이며, 다양한 문화공간과 공공미술

3) 2011년 11월 8일 문화예술위원회 광주전남혁신도시 지구단위 공공미술 기본구상 회의자료

이 있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카고의 시장이었던 리차드 데일리(Richard Daley)는 도시이미지를 혁신적으로 바꿀 구상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공간개발을 시도하였다.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관파트너십 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Lakefront Millennium Project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를 설립하고 펀드레이징(fund-raising)전문가와 도시공간 기획전문가를 영입하였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기업과 시민들에게서 기금을 모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개발계획을 추진였다. 공공미술의 경우 지명공모를 통하여 두 명의 작가를 선정하였다.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라는 아니쉬 카푸(Anish Kapoor)의 작품과, 공공예술작품 후원을 하는 레스터 크라운 가문에서 직접 작품 선정을 주도하여 여러 명의 후보군중 하우메 플렌사(Jaume Plensa)의 크라운 파운틴(Crown Fountain)이라는 작품을 선정했다. 클라우드 게이트의 경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크라운 파운틴의 경우 도시의 일반적인 시민과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선정 되었다. 1000명의 시카고 주민을 얼굴표정을 촬영하여 이를 스크린에서 투사하고 여름에는 분수로 활용되고 있는 이 작품은 21세기적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시도가 어필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외에 야외음악당, 정원 등은 프랭크 게리(Frank Gehry), 구스타프슨(Kustafson)등 최고의 디자이너에게 작품을 의뢰하였다. 밀레니엄파크의 총공사비는 475million달러가 소요되었는데, 이 중 크라운 파운틴이 17million달러, 클라우드 게이트의 경우 23million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비록 대단히 많은 공공미술 비용과 공사비가 소요되었지만, 시카고시가 밀레니엄파크로 얻게 된 이득 역시 무척 크다. 2005년 컨설팅회사에서 추정한 향후 10여 년 간의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영향은 1.4 billion달러에 달하였고, 2005년에서 2015년의 시카고의 총 방문객 추정으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1.9billion달러에서 2.6billion달러로 추정된다. 2006년에서 미국 내 최고 인기 방문 도시에 시카고 시가 뉴욕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는 등 도시의 이미지제고와 브랜드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공공미술이 공공공간과 결합하였을 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다.

2. 도시개발방식과 결합한 공공미술, 레이체 레인

유포레히트시(Utrecht)는 1997년부터 네덜란드 최대규모의 신주거지인 레이체

레이를 개발하면서 공공미술과 도시계획, 건축, 조경,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시나리오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체 레인시의 토지개발국과 문화국은 SKOR(Foundation for Art and Public Space)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레이체 레인을 넘어(Beyond Leidsche Rijn)라는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년 시의회에서 공공미술 추진에 쓸 재원확보를 위한 승인을 받고 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현재까지 10여년째 지속하고 있다. 15년간의 예산을 700만 유로로 추정하고 있고, 여기의 절반정도는 유트레히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일부 중앙정부 예산 및 SKOR의 기금과 일반 기업협찬으로 충당하고 있다.

레이체 레인에 조성된 공공미술 프로그램 유형은 다음과 같다.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위해 마련한 임시적인 용도의 베이스캠프와 같은 공간인 Action Research와, 이동가능하면 실험적인 형태의 건축을 지칭하는 Parasites가 있다. 도시개발이전에 예술가들이 부지의 비어있는 곳에 어디든 지을 수 있게 하여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White Spots은 열린 장소로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용도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디자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닌 예술가를 초청하여 Director Artists라 명명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rtist Houses는 공공미술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초청하여 예술가의 집을 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한다. 지역주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젝트인 Looping은 이를 통해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출판, 아카이빙, 심포지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레이체 레인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일정한 공간과 범위에서 예술가들이 작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 때로는 토지이용방식에 변화를 주거나 예측하지 못한 장소에 공공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고 도시와 함께 만들어가는 진화하는 형태의 공공미술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3. 도시디자인전략과 공공미술의 결합, 브리스틀

브리스틀은 영국 남서부지방의 항구도시로서, 1970년대 이후 탈산업화과정에서 쇠퇴하여 많은 일자리를 사라졌으나 1980년대 이후 민간개발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도심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1990년대 이후 지역개발활성화 차원에서 Bristol Legible City(BLC)를 도시디자인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회가 2000년에 승인한 공공미술정책(Public Art Policy)과, 2003년 작성된 공공미술 전략계획(Public Art Strategy)은 도시의 비전을 구현하

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공공미술을 통하여 장소나 동네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방향이나 길 찾기가 수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전략계획은 다른 도시계획과 개발과정에서 적극 연계될 수 있게 체계화하고 있다. 브리스톨 지구계획(Local Plan 2001-2011), 문화전략계획(Cultural Strategy), 중심부전략계획(City Center Strategy) 등에서 공공미술계획을 통합연계하고 반영하고 있다. 여러 차원의 계획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도시의 공공디자인과 예술이 일관된 지향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00여개의 공공미술이 설치되었고 도시공공미술을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Art and Public Realm Bristol)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예술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4. 도시디자인과 공공미술의 결합, 멜버른

호주 멜버른의 도크랜드(Dockland) 재개발은 1900년대부터 항만시설인 도크로 활발하게 사용되던 수변공간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쇠퇴한 이 지역의 재생을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이다. 200ha의 면적의 워터프론트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주거지역 2만명, 업무지역 4만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도크랜드 개발은 빅토리아도시개발청(VicUrban: Victoria Urban Development Authority)과 멜버른 시과 협력체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민간섹터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섹터는 개발규모의 1%를 예술작품을 위한 기금을 낸다. 빅토리아도시개발청은 이 자금으로 도크랜드 곳곳에 35여개의 예술작품을 설치하였으며 향후에도 50여개의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이할 점은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인프라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빅토리아항구(victoria harbor)와 yarra's edge를 잇는 보행교는 예술가와 엔지니어가 공동 작업하여 디자인하였다. 공공미술이 도시인프라와 결합하여 실용적인 공간을 창출한 사례이다.

5. 협력적 계획추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공공미술의 활용, 시애틀

30년 이상 도시공공미술의 모범적 사례도시로 여겨지는 시애틀은 1973년부터 공공미술을 위한 1%법을 처음 채택한 도시이다. 도시 전역에 걸쳐 350개의 작품이 설치되었고 시민들이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도로, 다리 등 공공공간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였다. 시애틀은 Municipal Art Plan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1%법의 기금뿐만 아니라 시의 예술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부서, 즉 도시개발, 교통, 공원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 공공예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도 한다.

시애틀은 도시공간에 곳곳에 공공미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특징이지만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특징적이다. 시애틀의 공공미술지도는 여러 지역에 따라 달리 작성되었고, 특히 도시중심부 지도에는 160여개의 작품 위치와 작품명이 표기되어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다. 최근에 조성된 올림픽 조각 공원(Olympic Sculpture Park)도 공공미술을 위해 버려진 도시 공간을 도시인프라계획과 협력하여 공공공간을 조성한 예이다.

6. 도시이벤트로서 공공미술의 활용, 취리히

스위스 취리히는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시이벤트를 2~4년 만에 한번 씩 개최한다.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기획하고 도시 공공공간에 설치한다. 1998년에는 소(cow), 2003년에는 벤치(bench), 2005년에는 테디베어(teddy bear), 2009년에는 플라워화분(flower pot)를 주제로 하였다. 많은 예술가들이 이 이벤트작업에 참여하여 도시의 중심부 거리에서부터 공항에 이르기까지 도시풍경을 일시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색다른 즐거움을 느낀다. 공공미술이 도시이벤트와 결합하여 도시 일상에 실질적 기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09년 여름에 있었던 플라워화분의 기획 의도는 지구환경과 생태위기의 상황에 대응하여 도시에서 자연을 보다 가깝게 하여 매력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 300개의 화분에 33종류의 식물종을 활용하였고 화분의 디자인은 젊은 예술가들이 담당하였다. 스위스, 독일, 이태리의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취리히시는 약10억 정도의 화분설치비용 그리고 일부 화분작품은 개별 기업들이 스폰서하였다. 이벤트 이후에는 옥션을 통하여 화분작품을 판매하였다.

제4장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구현전략

도시계획 과정에 공공미술이 연계되어 도시경관과 문화환경의 질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앞서 제기한 공공미술의 문제점은 지금까지의 건축물 미술장식품 제도에서 만들어진 많은 공공미술이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제도적인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도시발전 전략 및 관련계획과 공공미술이 연계되어야 한다. 한 도시의 차별화된 전략이 문화적 환경조성이 있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철학이 반영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서울시의 경우 2011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많은 자치구 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비법정계획이므로 구속력은 없지만 실효성이 있음)등에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부문의 계획(예를 들어 경관 계획이나 공원녹지계획 등)에서도 도시가 지향하는 문화환경과 관련된 계획방향이 적극 수용되고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종시의 경우 2010년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이나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많은 도시들이 공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략을 채택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공디자인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지자체 도시발전전략과 부합될 경우 조례와 같은 법률적 근거를 만든 후 적극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광주시, 용인시, 공주시, 구리시 등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독립된 공공미술 조례제정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공디자인 조례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셋째는 기존의 도시 관련 법 또는 시행령, 계획 제도에 공공미술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예컨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⁴⁾ 내 공공미술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시 공공미술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및 방향, 도시 공공미술 유형 및 유형별 조성방안, 도시 경관특화지역별 공공미술 설치 가이드라인 등이 반영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내 공공미술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해당지자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설득 및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도시개발 관련 경관계획 내 공공미술을 추가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디자인 전략 가운데 7대 경관과제⁵⁾를 선정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다. 향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성도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기타사항 등에 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7대 경관과제는 건축물미관, 도시환경색채, 옥외광고물, 공원녹지수변,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으로 구분된다.

시 역시 도시경관 관련 계획수립 시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등과 같은 위계로 공공미술을 다루게 함으로써 도시디자인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기존의 계획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⁶⁾ 제도는 활용하여 건축구역마다 통합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도시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역별 장소의 맥락과 여건에 부합되는 공공미술 작품설치가 가능하게 된다.⁷⁾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정신청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⁸⁾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경관법의 3만m²의 대형개발의 경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도시공공공간과의 연계된 공공미술, 도시적으로 코디네이션된 공공미술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과 심의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미술을 경관법 내의 경관협정⁹⁾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을 적용하도록 제안된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협정을 통해 공공미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미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형개발보다는 작은 지역이나 마을단위에서 적용하기 수월한 방법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려있다.

공공미술 관련 법·제도와 정책이 갖추어져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워진다.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세부전략으로 첫째, 통합적인 공공미술 추진조직 및 도시 큐레이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트인시티, 도시갤러리, 안양예술프로젝트 등 국내 공공미술 사업은 행정지원조

6)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7)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특별건축구역을 통해 각 건축구역마다 통합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였다.

8)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다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9) 경관협정은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개념으로,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직의 경우 전문성이 미약한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공통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공공미술 작품설치를 위한 장소협이나 사업추진 과정 등 다양한 행정지원 문제에 대한 결정이 관련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보다 행정상의 편의로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미술 전문가가 포함된 도시디자인 전담팀을 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 작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추진위원회 등을 운용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큐레이터¹⁰⁾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도시행정과 예술을 매개하고, 예술가와 시민을 중재하며 여러 관련 전문가와 예술가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미술 비영리조직 구성을 통해 민간차원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시민, 문화예술인, 지역사회 리더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 비영리조직 구성을 통해 다양한 공공미술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민간기금 조성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아직 지역 예술환경의 투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모금이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향후 실현가능성을 증대될 것이다. 도시나 커뮤니티 관련 NPO도 마을만들기 등의 프로젝트를 공공미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민간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모색도 요구된다.

셋째, 공공미술과 연계한 예술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전략이다. 공공미술은 ‘프로세스의 예술’¹¹⁾로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계획, 과정, 과정, 결과 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동체나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예술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을 도시 내 영유아 및 초·중·고, 대학 내 교육 커리큘럼과 연계하거나 다양한 예술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

넷째,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도시 차원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도시별 웹사이트에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결과 정보를 업로드하거나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공공미술 투어맵을 제작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해외의 많은 도시들은 도시의 공공미술을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웹사이트를 활용하면서 예술가와 만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0) 시카고의 경우 한 명의 공공미술 큐레이터가 1년에 2~3작품을 시민설명부터 작품설명까지 담당하며 경관에 대한 이해, 도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 장소 연구, 행동 연구, 창조적 행정 기획, 큐레이터 페이퍼 기술 능력, 매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미술관 큐레이터와 다른 매개형 큐레이터로 활약하고 있다.

11) 박삼철(2006)은 “공공미술은 활성화 활력을 재생하는 ‘프로세스의 예술’ 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제5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기본구상 및 실행전략

1.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요 및 공공미술 연계의 필요성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전국 11개의 혁신도시 조성사업¹²⁾이 추진 중에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구 5만명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로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5개 공공기관¹³⁾이 2014년 이전할 예정이다. ‘물과 빛이 하나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 Green Energypia’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거점도시, 혁신인력의 지방화·정착화 유도, 높은 삶의 질을 공유하는 사람 우선의 혁신환경 등을 미래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계획내용과 도시와 이전 공공기관 건축물의 조감도 등을 살펴보면,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관계적인 하향식 도시개발방식으로 인해 도시에 거주하게 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문화 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부재한 채 공허한 캐치프레이즈만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2.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여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유리한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도시의 입지환경과 개발계획상의 도시환경이 자연친화적인 점이다. 도시가 조성 될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은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넓은 평야지대로 ‘수평성’과 ‘자연성’의 경관적 특성이 있다. 또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중앙부의 대규모 거점녹지공간이 될 국내에서 일산 호수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520,000㎡)의 호수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의 주거 및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와 3개의 저수지를 축으로 도시 전체를 실개천으로 연결하는 블루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둘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개별 건축물 내 미술작품

12)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의미한다.(혁신도시 홈페이지, innocity.mltm.go.kr)

13) 한국전력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식회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정사업정보센터

을 설치하는 것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선택적 기금)을 선택할 때 일정규모의 예산을 도시 차원에서의 공공미술 기획에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잠재적 거주민들이 풍부한 문화시설과 문화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정책연구(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방안 연구) 설문조사¹⁴⁾ 결과 공공미술이 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 작품이 직장 또는 아파트 주변의 생활환경에 설치되는 것과 공원 및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비전 및 기본구상

공공미술과 도시계획이 결합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초기 도시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설정할 때 문화적 도시의 구현 일환으로서 공공미술전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 속에서 도시개발과정 속에서 창의적 공공미술과 결합하거나 도시의 건축물이나 인프라시설을 디자인할 때도 예술가와 전문가가 협동하여 새로운 방식을 실험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도시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니 도시개발과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다만 지금이라도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 도시의 비전이 여러 조성주체와 공유될 수 있다면 다양한 개발프로세스에서 이를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교량, 가로, 공원 등 설계과정을 변경하여 예술적 개입을 통하여 공공미술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개별 공공미술 추진을 최대한 지양하고 통합된 공공미술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된 이미지의 공공미술 작품들이 공공공간과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미술이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제시한다. 여기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므로 하나의 가상의 계획구상을 해보는 것이고, 향후에 일어날 상황을 상정하며 필요한 행위와 대응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과 시나리오를 제시해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의 비전을 ‘자연을 만들어가는 공공미술’으로 설정한다. 이는 인공적으로 건조한 도시공간에서 자연으로 풍요롭고 정감 넘치는 도시로 변화하는데 공공미술이 하나의 매개로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모든 시민들의

1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2011년 10월

공유하는 공공미술이 되기 위해서는 내 건물 앞이 아닌 우리의 동네, 우리의 도시를 위한 공공미술이라는 전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연계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의 기본방향은 크게 '장소적 조건을 고려한 공공미술',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공공미술', '제3의 공간으로서의 공공미술'로 설정하였다. 도시가 입지하는 전라남도 나주시의 장소적 조건인 수평성과 자연성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장소적 조건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조성 될 미술조각품 뿐만 아니라 도시 인프라시설과 도시공원 및 광장 등의 공공장소 디자인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만의 도시 정체성을 만들고, 시민과 장소 사이에서의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다. 즉 혁신도시에 담는 공공미술은 도시의 미적 장식물로서의 오브제를 넘어 작품이 위치하는 장소의 물리적, 건축적, 사회적 구조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장소 고유의 스토리텔링이 작품 의미의 근원이 되며 장소 자체를 작품으로 인식하는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¹⁵⁾

둘째, 지역 커뮤니티와 단절된 채 이루어지는 기존의 공공미술을 지양하고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술 간의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의 예술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로세스¹⁶⁾ 속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공미술은 호기심과 관심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과정을 추출할 수 있다. 셋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개발 컨셉 및 이전공공기관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공공미술 작품을 조성할 수 있다(예, 미디어나 에너지가 그러한 컨셉의 예가 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공공미술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문화예술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개발계획, 자연 및 문화환경, 도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 등과의 관계 속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도시 고유의 특징을 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의 틀로써 작동할 수 있는 장소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미술의 사회·경제·문화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시각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도시의 대표 상징적 아이콘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관련계획¹⁷⁾에서의 조망점과 주요 경관축을 설정하였다. 둘째, '물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15) 박찬숙, 권영결 외, 2007, 『유럽의 도시 공공디자인을 읽다』, 가인

16) 박삼철(2006)은 “삶의 현장에 있는 공공미술은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기억과 추억, 상상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미술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의 미학과 과정의 미학에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말하고 있다. p326

17) 관련계획으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설계보고서 기본계획' 과 국토해양부(201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참고했다.

이다. 시민들의 생활 공간속에 공공미술을 가깝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가까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관련계획에서의 주요 가로축(도시상징도로, 도시내부 순환축, 호수공원주변도로, 보조녹지 경관축)과 주거단 및 오픈스페이스를 연결하는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켰다. 셋째, ‘복합적 이용과 활동이 가능한 지역’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사용을 위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공공미술 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상업업무지역이나 도시공원, 공공기관 및 주거단지 내 광장 등이 포함되었다. 넷째,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다. 도시민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질 높은 공원녹지나 수변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련계획상의 녹지축과 수경관축, 그리고 중앙이 배매산을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으로 선정했다. 다섯째, ‘활발한 커뮤니티 형성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혁신도시에 조성되는 스쿨 콤플렉스 2개소와 주거단지 및 공공기관 내 오픈스페이스, 중소규모 도시공원 등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공공미술 우선추진지역은 중앙호수공원,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중심상업지구 가로 및 공공공간, 내부순환도로, 도시진입공간, 스쿨 콤플렉스를 선정해 개발 컨셉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공미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정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미술과 함께 진화하고 성장하는 도시를 설정한다. 2011년~2013년은 공공미술 도입단계로 혁신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공감대 형성과정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협력적 참여로 공동이 함께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또한 공공미술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성을 마련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공공미술 관련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2014년 이후는 공공미술 확산 및 성숙단계로 도시 공공공간과 주거·상업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공공미술 관련 전문가와 행정기관·시민·예술가 등 다부문 공공미술 관리운영조직 가동, 재원확보 방식의 다각화,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이다.

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실행전략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 조직 구성 측면, 재원 확보 측면,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우선 도시 차원에서 지속가능하게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¹⁸⁾에 공공미술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시행지침 내용 중 공공미술과 관련된 부분은 ‘제5편 경관 및 공공부문’으로 1.경관부문 시행지침, 2.색채경관, 3.공원·녹지·수변경관, 4.건축물미관, 5.옥외광고물, 6.가로시설물, 7.야간경관, 8.공공부문 시행지침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행지침에 공공미술 연계시키는 방안은 별도의 공공미술 시행지침 내용을 추가하는 적극적 안과 현재의 시행지침 ‘경관 및 공공부문’ 내 공공미술 내용을 포함시키는 소극적 안이 있다. 실현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의 설득 및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건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둘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관할주체인 나주시 내 공공미술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기금제를 통한 공공미술작품 설치의 기본방향,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기금의 차등적 적용에 관한 사항, 미술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미술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미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의 공공미술 자체규약을 통해 도시디자인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헤이리 아트밸리와 북촌 한옥마을 사례와 같이 건축물 외관 및 가로환경 제고를 위해 지역 거주민들이 협정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침을 통해 제어하는 방식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공공미술을 추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체규약을 통해 1층부 개발을 통한 공공미술 회랑 조성, 옥상을 활용한 공공미술 갤러리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넷째, 통합적인 공공미술 추진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개발계획과 문화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공공미술을 위한 조직구성 측면에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추진단,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공공미술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미술협의체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한 공공미술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선택적 기금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실질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공공미술 운영위원회, 공공미술추진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겠다.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시민과 기업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기부

18)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시행사에서 도시건설시 토목, 설계, 조경 분야 등에 참조하는 규정지침(LH에서 제작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으로 강제성은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

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공공미술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형성된 이후에는 향후 나주시나 이전기관 주체 등이 공공예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미술 협의체는 추진위원회가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혁신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가 확산되면 혁신도시의 차후 벌어지는 공공프로젝트에 공공미술을 일정 부분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도 수월해 질 것이다.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온라인으로 홍보함으로써 도시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밖에 초기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하거나 시나 지역 공공기관과 학교가 예술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향후에는 도시 곳곳의 상설 공공미술 작품과 일시적 작품설치 및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고유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공공미술 예술제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6장 마치며

우리의 도시환경은 오랫동안 기능과 효율을 중시하는 개발방식이 지배해왔다. 이제는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고민하고 시점에 와있다. 오랜 시간이 누적 되어 형성된 도시 경관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자연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것인가, 풍요로운 문화 환경을 어떻게 창출하고 지속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미술이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 도시계획과 연계한 공공미술 전략모색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공공미술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도시의 문화 환경에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전과 가치가 공유되어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공공미술로서 제시하는 도시 미래상은 간명하지만 중요하다. 공공미술을 통하여 우리의 도시는 즐겁고 유쾌한 체험의 장소가 되고, 고유한 장소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고, 지역 주민은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나아가 이를 매개로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고 확산되어 갈 수 있다. 공공미술을 통하여 도시가 변화하는 것은 작지만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공간의 혁신, 도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혁신도시에서 기대해본다.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여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공미술은 어메니티, 엔터테인먼트, 장식 이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탐구일 수 있다. 공공미술은 하나의 분야나 전문영역은 아니다. 그것은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나 사유방식이다. 예술을 공공적이게 하는 지점은 바로 미학, 공적인 삶, 문화적 아이디어, 정치적 이슈가 서로 교차하는 곳에 놓여 있다 ... 공공미술은 여러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독특한 개인이 지닌 상상력과 잠재력을 자극한다.” Philip, Patricia C. quoted in Korza, Pam. "Evaluating Artistic Quality in the Public Realm," On View: Journal of Public Art and Design, Spring/Summer (1990)

참고문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0, 녹색국토환경조성을 위한 SOC시설의 디자인향상방안 연구: 해외출장보고서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학고재, p321

양현미, 2009, "예술에서 퍼블릭 개념의 변화에 관한 고찰: 공공 미술을 중심으로, 공공성, 미메시스, pp. 257-297

Bristol City Council, 2003, Public Art Strategy, Bristol, Bristol

City of London, 2009, Public Art Program, London, Canada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 2010, Public Art Toolkit, Creative City Network

Regina Flanagan, 2008, "The Millennium Park Effects," The Practice of Public Art, ed. Cameron Cartiere and Shelly Willis, New York: Routledge, pp. 133-151.

Tom van Gestel, Henriette Heezen, Natharic Zonnenberg, eds. 2009, Art as Urban Strategy: Beyond Leidsche Rijn, Rotterdam: NAI Publishers

<http://aprb.co.uk>

<http://www.seattle.gov/arts/pubicart>

지역발전과 도시문화환경 향상을 위한 공공미술의 비전과 전략

부 록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소개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소개

건축물미술작품(구.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혹은 증축할 때에 “1안)건축 비용의 1%이하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2안)설치비용의 70%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는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주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 동법시행령 제1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2011.11. 26 개정)

취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나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혁

구분	연도	비고
권장 시기	1972~1994	문화예술진흥법 근거조항 마련, 설치 권장
의무화 시기	1995~현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전국 설치 의무화
규제 완화 시기	2000~현재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설치비용을 건축비 1% 이상에서 1% 이하로 낮춤

- 1972. 8월 :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72. 9월 :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84. 7월 : 서울시 의무사항으로 조례제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1988. 6월 :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강화
 - 1995 :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2000 : 미술장식 사용금액 비율 1%이하로 하향 조정
 - 2004 : 정부가 발표한 『새 예술정책: 예술의 힘』에서 공공미술 도입을 위한 법개정 계획 공포
 - 2011. 5월 :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골자로 법개정
 - 2011.11월 : 선택적 기금제 시행 실시
- ※ 2010년 기준 전국 약 1만2천여점 설치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미술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

-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④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방법)

-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 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2】

건축물의 미술작품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제외)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0이상 1천분의 70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법령 :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1]은 건축물미술작품제도로 작품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밑줄 친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1, 시행령 제14조의1,2)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적용대상 건축물입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단독주택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품감상실·비디오품소극장(「영화 및 비디오품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품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직업훈련소(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품감상실·비디오품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삭제 <2006.5.8>
- 마. 삭제 <2006.5.8>
- 바. 삭제 <2006.5.8>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나. 철도역사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마. 집배송시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장례식장

10.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원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 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 연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기획에서 일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삭제 <2003.2.24>
- 라.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17. 공장

- 가.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제조소
- 라. 위험물저장소
- 마. 위험물취급소
- 바. 액화가스취급소
- 사. 액화가스판매소
- 아. 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자.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도료류 판매소
- 카.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20.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 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라. 통신용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26. 묘지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화장장
- 나. 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화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 건축법 69-74조 및 동법 시행령 105조

: 건축법 69-74조 및 동법 시행령 105조는 필요시 건축물미술작품을 단위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을 근거로 건축물미술작품은 개별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 지구단위 계획과 연동하여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건축법 69-74조

제8장 특별건축구역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4.14〉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4.1〉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4.14〉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신청기관으로 본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4.14〉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 건축법시행령 105조

제8장 특별건축구역 <개정 2000.6.27, 2008.2.22>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09.4.21, 2009.7.30>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0.12.13, 2011.6.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도시지역일 것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미술작품설치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의무 고지	▷ 미술작품설치계획 수립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감정·평가	◁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
		▽
	감정·평가 결과 통보·공개	▷ 미술작품 제작·설치
		▽
	미술작품 설치확인	◁ 미술작품 설치신고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 미술작품 유지보존
		▽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	
		▽
건축물 미술작품 DB 구축	◁ 건축물 미술작품 DB사이트 입력 (www.publicart.or.kr)	
		▽
	미술작품 정기적 확인	
		▽
	필요시 원상회복	▷ 미술작품 원상회복
		▽
	미술작품 원상회복 확인	◁ 미술작품 원상회복 신고
		▽
	미술작품 관리대장 수정	
		▽
건축물 미술작품 DB 수정	◁ 건축물 미술작품 DB사이트 수정입력 (www.publicart.or.kr)	

기금출연 절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주요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물미술작품제도 법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미술작품제도 출연기금(공공미술 기부금)의 관리 운영
- 공공미술 설치 등 시범사업 운영
- 공공미술 관련 조사, 연구, 교육
-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계 관리 등 정보 서비스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공공미술 사후관리 지원

문의 및 연락처

- 작품심의 문의 : 해당 광역시도
- 기금출연 문의 : 광역시도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제도운영 일반 : 문화체육관광부
- ※ 연락처
 -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공공미술포털사이트 www.publicart.or.kr 에서 조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TF팀 : 02-760-4603, www.publicart.or.kr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2-3704-9517